

향후 대응

출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조치로 체류를 인정받았던 외국인들에 대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기간에 맞춰 아래와 같이 귀국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.

① 체류기한이 6월 29일까지인 분

아래와 같이 체류기간 변경을 허가합니다.

- a. <특정활동 (6개월)>등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 : <특정활동 (4개월)>
- b. <단기체류 (90일)>로 체류하고 계신 분 : <단기체류 (90일)>

주1) 현재 허가 받은 범위에서 계속해서 취업활동 할 수 있습니다.

주2) 다음 갱신시에는 <특정활동 (4개월)> 또는 <단기체류 (90일)>을 <이번 한정>으로 허가합니다.

② 체류기간이 6월 30일 이후인 분

<이번 한정>으로 다음과 같이 체류기간 변경을 허가합니다.

- a) <특정활동 (6개월)>등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 : <특정활동 (4개월)>
- b) <단기체류 (90일)>로 체류하고 계신 분 : <단기체류 (90일)>

주1) 현재 허가 받은 범위에서 계속해서 취업활동 할 수 있습니다.

주2) 귀국 곤란을 이유로 하는 체류허가는 이번으로 제한됩니다. 이번에 허가 받은 기간 내에서 귀국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주3) 상기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③ 새롭게 귀국 곤란을 이유로 체류를 희망하는 분

2022년 11월 1일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한해 다음②의 <이번 한정>의 조치를 인정합니다.

주) <특정활동 (고용유지지원)>에 대해서는 최대 1년 (※<이번 한정>) 을 허가합니다.

※<이번 한정> 허가를 받으신 분은 <확인서> 제출이 필요합니다.

특례조치 종료 대상자

	대상자	종전 조치	새로운 조치
1	전 기능실습생	특정활동 (6월 · 귀국곤란 · 취업가)	특정활동 (4월 · 귀국곤란 · 취업가)
2	전 유학생	특정활동 (6월 · 귀국곤란 · 주28시간이내 취업가)	특정활동 (4월 · 귀국곤란 · 주28시간 이내 취업가)
3	전 장기체류자	특정활동 (6월 · 귀국곤란 · 취업불가) (※)	특정활동 (4월 · 귀국곤란 · 취업불가) (※)
4	단기체류자	단기체류 (90일 · 귀국곤란 · 취업불가) (※)	단기체류 (90일 · 귀국곤란 · 취업불가) (※)
5	고용유지대상자	특정활동 (최대 1년 · 고용유지지원 · 취업가)	특정활동 (최대 1년 · 고용유지지원 · 취업가) 주) 갱신시 4월
6	인턴십 (고시 9호) 제조업 외국종업원 (고시 42호)	특정활동 (6월 · 귀국곤란 · 취업가)	특정활동 (4월 · 귀국곤란 · 취업가)
7	전 외국인가사지원인재	특정활동 (6월 · 취업활동)	특정활동 (4월 · 취업활동)

※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주28시간 이내 취업가